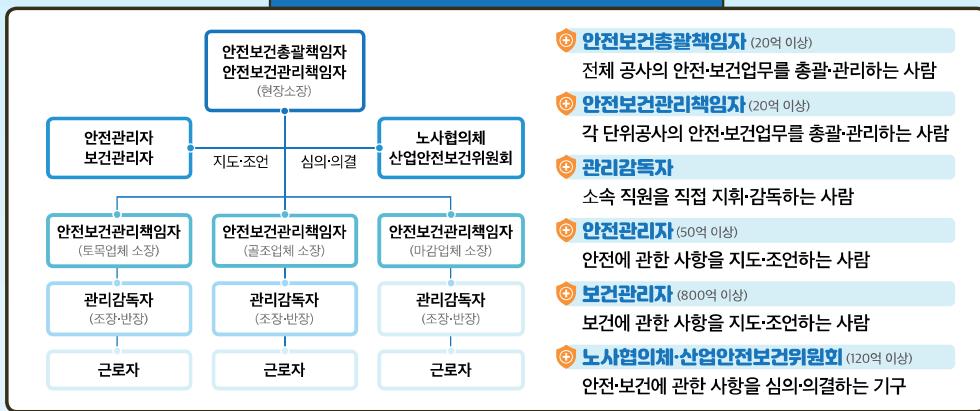


건설현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5~18조, 제24조, 제75조



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추락, 붕괴, 기계기구, 전기등의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사항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함”

(다음장 참조)

위험성평가

제36조

사업주·근로자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함께 찾아내어,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성립 후 1개월 이내 “**초초평가**”
 - 기계·장비 등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
 -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는 “**정기평가**”
- * 월·주·일 단위 **상시평가** 활용 가능(위험성평가 고시 제15조)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가 참여”

안전보건교육

제29~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TBM

작업전안전점검

작업 시작 전 모여서 공구상자(Tool Box) 앞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작업계획 및 안전확보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Meeting)

작업중지

제51~52조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우선 작업중지”

도급인(원청)의 의무

제63~64조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하청)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 수급인
<원하청 소장, 월 1회>

작업시작 시간, 연락 및 대피 방법, 위험성평가 등 협의

점보제공

작업 주의사항 및
안전보건수칙 제공

순회점검

도급인
<원청소장, 격일 1회>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교육지원

교육 장소 및 자료 제공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원하청 소장 + 근로자, 격일 1회>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점검

온재작업 관리

관계수급인 간 작업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57조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자체없이 119·지방노동관서로 신고”

아차사고

산업재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

아차사고 신고·관리는
재해예방활동의 기본!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

제69~71조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도급인(원청)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할 수 없음

공사기간의 연장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책임으로 착공지연, 시공중지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자연재난,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발주자에게 공시기간 연장 요청)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재발생의 위험이 있어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

기계·기구 안전조치

제38조, 제76조, 제81조, 제84조, 제93조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타워크레인 등 고위험 기계·장비 사용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보건규칙 제38조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대여 시 조치

임대인은 기계의 보수·수리·점검내역, 부품 교환 이력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
임차인은 운전자의 자격 등을 확인하고, 기계 작동 및 작업방법을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고소작업대, 골돌라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여부 확인 및 주기별 **안전검사** 실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타워크레인, 항타기, 건설용리프트 조립·해체 시 작업자의 적정 자격여부, 기계기구 등의 결함여부 등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및 절차를 수립

화학물질 재해예방

제114~115조

유해위험물질 사용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교육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을 소분하는 경우 각 용기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건강장애 예방

제125조, 제128의2조, 제130조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작업환경측정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측정·평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노출 대상 업무의 근로자 배치 적합성을 평가

유기시설 설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마련

